

장애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
운영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○ 존경하는 임춘대 위원장님!

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

국민의힘 마포구 제1선거구 이민석 의원입니다.

○ 본 의원이 발의한 「장애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.

○ 본 조례는 조례 속 장애차별적 용어 등을 정비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시정하고 장애인의 권익 개선에 기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」 등 5개 조례에서 사용된 장애차별로 오인될 수 있는 ‘심신장애’, ‘일반인’, ‘지체부자유자’, ‘정신박약’, ‘정신이상자’를 ‘건강상 이유’, ‘비장애인’, ‘지체장애인’, ‘지적장애’, ‘정신장애인’으로 각각 변경하고자 합니다.

○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